

첨부1

상법 일부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4조(발기인의 책임면제, 주주의 대표소송) <u>제400조와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</u> 규정은 발기인에 준용한다.	제324조(발기인의 책임면제, 주주의 대표소송) <u>제400조,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 2</u> -----.
제340조의5(준용규정) <u>제350조제2항, 제350조제3항</u> 후단, 제351조, 제516조의9제1항·제3항·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	제340조의5(준용규정) <u>제350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50조(전환의 효력발생) ①·②(생략) ③ <u>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.</u>	제350조(전환의 효력발생) ①·②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제371조(정족수, 의결권수의 계산) ① (생략)

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·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·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394조(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)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. 회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.

② (생략)

제401조의2(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·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.

제371조(정족수, 의결권수의 계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-

-----.

제394조(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) ① -----

-----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01조의2(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, 제401조,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“이사”로 본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06조의2(다중대표소송)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·제4항, 제403조제2항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.

제408조의9(준용규정) 집행임원에
대하여는 제382조의3, 제382조
의4, 제396조, 제397조, 제397조
의2, 제398조, 제400조, 제401조
의2,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,
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
한다.

제409조(선임) ① (생략)

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
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
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
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
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
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
다.

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
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
다.

④ ~ ⑥ (생략)

제415조(준용규정) 제382조제2항,
제382조의4, 제385조, 제386조,
제388조, 제400조, 제401조와 제

제408조의9(준용규정) -----
대해서는 -----

----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,
제406조의2, 제407조, 제408조-
-----.

제409조(선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 100분의 3(정관
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
정할 수 있으며, 정관에서 더 낮
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
에는 그 비율로 한다)-----
--.

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
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
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
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
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
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
결의할 수 있다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415조(준용규정) -----

----- 제401조, 제

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<후단 신설>

③ 최대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.

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

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(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,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)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

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.

⑤·⑥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(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,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)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.

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